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1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 국가하천 한강(섬강 합류점~팔당댐 직하류)과 지방하천 금당천, 곡수천은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본 과업은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향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계획의 개요

1.2.1 추진경위 및 계획

- 2021.09~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종류) [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제7조 제1항 관련)

1.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근거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하천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 하여야 한다.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概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7조(하천공사시행계획)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일원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과업연장 101.22km)

다. 규 모

등급	하천명	과업연장(km)
국가하천	한강권역(섬강 합류점~팔당댐 직하류)	68.47
지방하천	금당천, 곡수천	32.75
계	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2개소	101.22

라. 계획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마. 계획수립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바.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 계획수립기간 : 2020 ~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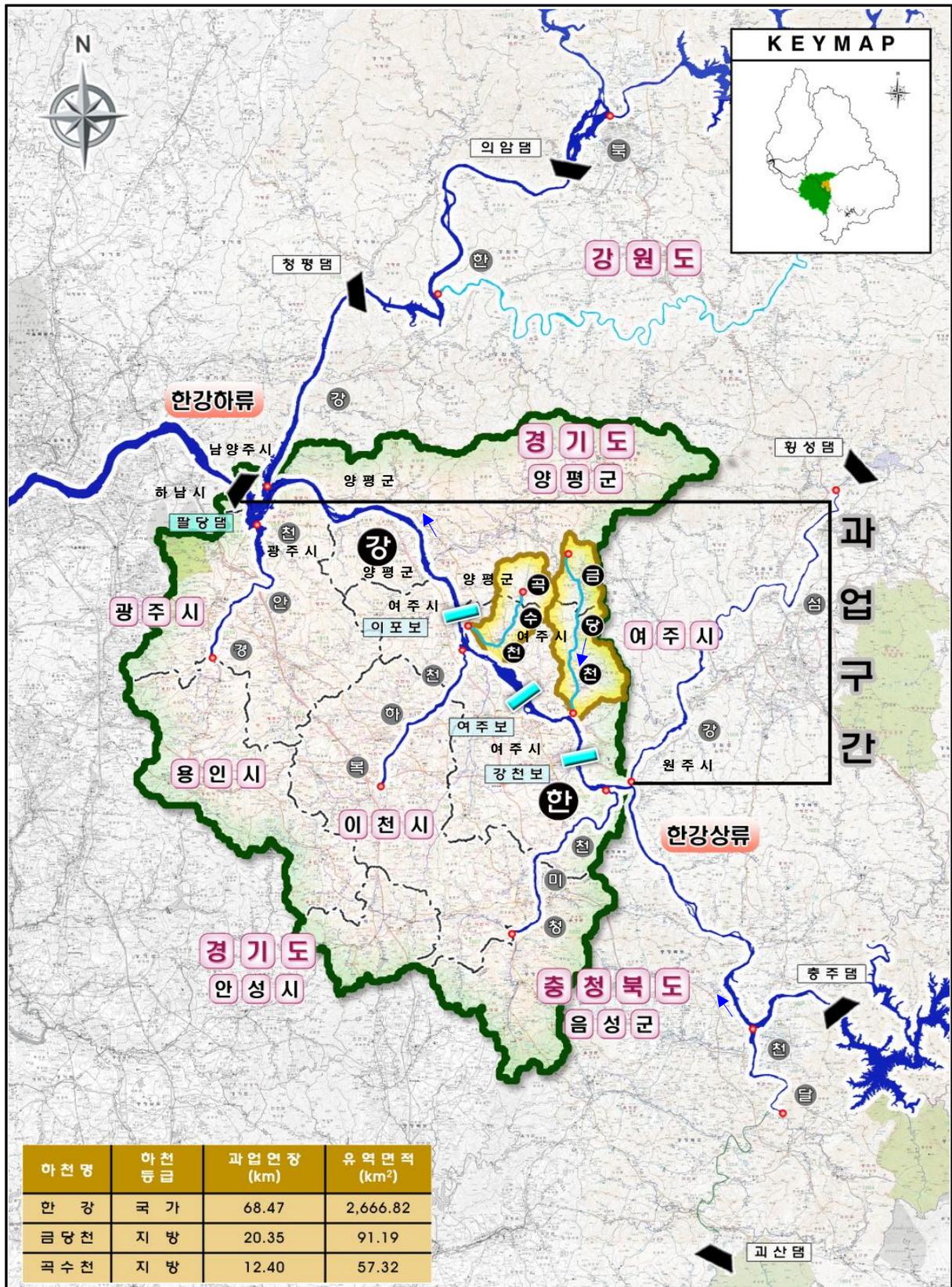
아. 계획내용

1) 계획의 범위

- 국가하천 1개소, L=68.47km(한강)
- 지방하천 2개소, L=32.75km(금당천, 곡수천)

〈표 1.4-1〉 과업대상 하천 현황

등급	하천명	과업구간		하천연장(km)	과업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국가하천	한강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섬강 합류점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한강(국가) 합류점	38.57	38.57	하도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한강(국가) 합류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직하류	29.90	29.90	수몰지
	소계	국가하천 1개소(섬강 합류점~팔당댐 직하류) ※ 유역면적 : 2,666.82km ²		68.47	68.47	
지방하천	금당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한강(국가) 합류점	20.35	20.35	
	곡수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한강(국가) 합류점	12.40	12.40	
	소계	지방하천 2개소 ※ 유역면적 : 금당천 91.19km ² , 곡수천 57.32km ²		32.75	32.75	
합계	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2개소		101.22	101.22		



(그림 1.4-1) 위치도

2) 하천기본계획(변경) 내용

가)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정비계획수립

- 하천 치수상의 안정성 확보 및 하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고려
- 생태환경 고려한 사면보호, 유지유량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조성
- 치수 및 이수기능, 환경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조성

나)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 결정

-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고려한 횡단계획 수립
-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 가용 가능한 하천부지 활용 및 주민 사유권침해 최소화 계획 수립

다) 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폐천부지 및 유희지를 이용하여 본래 하천공간복원 계획 수립
- 하천의 생태기능 보존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부속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계획효과 극대화

조화로운 하천관리		
안전한 하천관리		
바람직한 하천관리		

3) 유형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산지 하천	농경지 하천	도시 하천
정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댐 설치 ○ 안정하상 계획 ○ 횡단구조물의 충분한 통수능력과 공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강화 지양 ○ 하천공간 복원(홍수터, 천변저류지, 습지 등)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공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공간 복원(천변 저류지)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 공법 도입 ○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수시설 도입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대상지역의 설정

2.1.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 본 계획은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계획으로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및 강원도 원주시 일원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행정구역 구간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표 2.1.1-1〉 공간범위 설정

구분	도	시·군	대상하천
한강권역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 하천
	강원도	원주시	한강

〈표 2.1.1-2〉 하천별 공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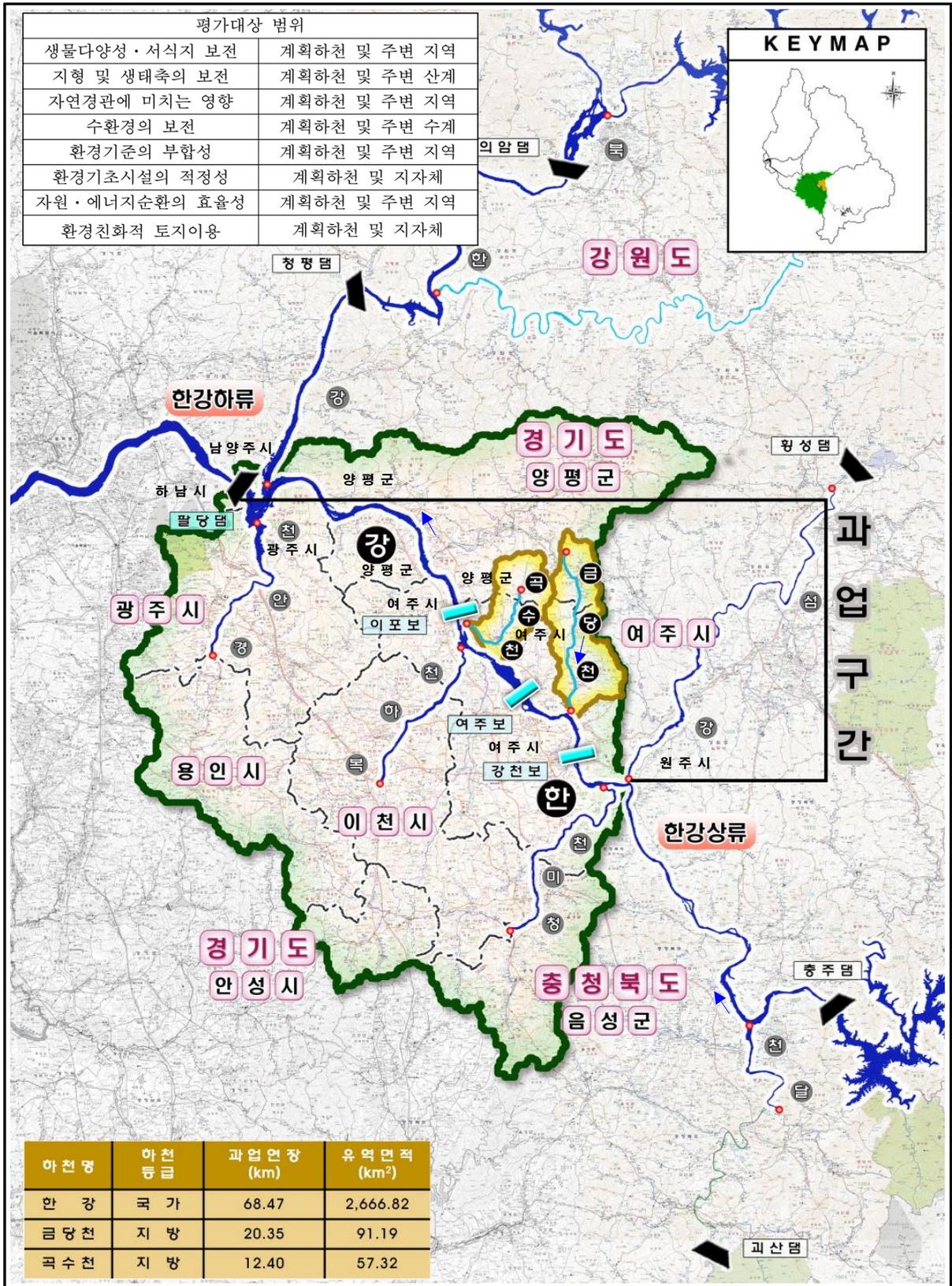
등급	하천명	과업구간		하천연장 (km)	과업연장 (km)
		시점	종점		
국가하천	한강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섬강 합류점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한강(국가) 합류점	38.57	38.57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한강(국가) 합류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직하류	29.90	29.90
	소계	국가하천 1개소(섬강 합류점~팔당댐 직하류) ※ 유역면적 : 2,666.82km ²		68.47	68.47
지방하천	금당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한강(국가) 합류점	20.35	20.35
	곡수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한강(국가) 합류점	12.40	12.40
	소계	지방하천 2개소 ※ 유역면적 : 금당천 91.19km ² , 곡수천 57.32km ²		32.75	32.75
합계	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2개소		101.22	101.22	

2.1.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환경영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계획하천 및 지자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 범위 설정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 수생 및 수변식물의 식생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기본계획 구간, 주변 경관자원 분포 및 경관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수환경의 보전	○ 하천유역별 오염부하량 검토 ○ 홍수량 및 홍수위변화 등의 수리수문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하천정비시 기상, 대기질 변화 영향예상지역 ○ 하천정비시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영향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공급 필요성 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지자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시 폐자원 발생 및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지자체



(그림 2.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2.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검토항목	환경영향요소	영향수준
검 토 항 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정도 ○ 계획 수립 전·후의 영향 정도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동·식물 영향 -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 경관 저해 및 훼손 정도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영향 여부 +++ ++ ++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수립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 환경기초시설 필요성 여부 -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 여부 +++ + +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친환경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주) 환경영향요소에 중요정도에 따라 “+” : 영향미미, “++” : 영향보통, “+++” : 영향높음 등으로 구분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 본 하천기본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 하였음

〈표 2.2.1-2〉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선정
1) 계획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	○
나)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각종 보호지역,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 필요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요 산림축의 훼손,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등의 검토 필요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구간 및 주변 경관 자원 등의 영향 여부 검토 필요	○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검토 필요	○
나)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 시행시 국가, 지역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여부의 검토 필요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파악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 시행시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
다)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필요	○

2.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조사·예측·평가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2.2-1>과 같음
-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 환경부」에 준하여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계획임

<표 2.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 현황, 식물상 및 식생현황,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 조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②조사범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조사범위: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조사내용: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위락·경관현황, 경관자원 현황, 환경관련지역 및 지구 현황 ②조사범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하천기본계획구간 및 주변의 경관자원 분석과 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 등의 영향 예측

〈표 2.2.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①조사내용 : 지표수(하천), 하천퇴적물 현황 농도, 오염원현황, 계획구간 및 주변하천, 재해 및 수해복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③조사방법 : 측정망 및 수계를 고려한 현지 및 문헌조사 실시 ④조사지점 : 하천별 하천수질 및 하천퇴적물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검토 ○ 계획하천의 유지 목표수질 검토 ○ 오염부하량 검토 ○ 계획구간의 홍수량 및 홍수위 등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 홍수대책 등의 치수계획 검토
		①조사내용 :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최근 기상현황 통계자료 분석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기준(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유지·달성에 대한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①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지자체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환경기초시설 공급 필요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폐자원 발생 검토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온실가스 배출 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계획 등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지자체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사회·경 제환경과 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지자체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검토

나.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질, 생태계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2.2-2〉 환경영향조사계획

구분	항 목		조사지점	횟수
환경질 조사	하천수질		28개지점 ^{주)}	2
	하천퇴적물		28개지점 ^{주)}	2
동·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하천	2
	육상 동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하천	2
		조류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하천	2
	육수 동물	어류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하천	2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한강, 금당천, 곡수천 등 3개하천	2

〈표 2.2.2-3〉 환경영향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하천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항목 - 유량,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대장균군,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납(Pb), 6가크롬(Cr⁶⁺),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총질소(T-N), 클로로필-a(Chl-a)
하천퇴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유화물(황화물),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량(TOC),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크롬(Cr), 아연(Zn)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분포 및 식생도, 노거수 및 보호수, 기타특정식물군락 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분포 현황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의 분포 현황

2.3 대안의 설정 및 검토

2.3.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의 대안 선정은 아래 <표 2.3.1-1>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와 수단·방법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2.3.1-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2.3.1-2> 대안의 설정

대안종류	검 토 방 법
계획비교	○ 대안1 : 현 상태 유지(No Action) ○ 대안2 :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시(Action)
수단·방법	○ 대안1 : 확폭 및 제방축제(보축) ○ 대안2 : 제방보축 및 하상굴착
○ 기 제시한 대안 이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 및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대안검토를 실시하겠음	

2.3.2 대안의 검토

가. 계획비교 대안 검토

- 본 계획은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Action)과 계획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2-1〉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대안종류	검 토 결 과	
	제1안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제2안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토지이용 측면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 이용측면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환경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가능
생태계 훼손가능성	○ 생태계변화 없음	○ 제방보축 및 정비구간에서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홍수시 하천훼손 우려)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의 자연재해 대비효과 미미함	○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unprogressive될 것으로 예상됨)	○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progressive될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자연경관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하천경관의 긍정적인 개선효과가 기대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하천수질의 변화는 없음	○ 공사시 부유토사의 발생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선 정 안	○ 효율적인 하천이용, 홍수피해 방지,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방향 지침으로써 활용,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써 편의 제공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계획의 적정성 검토

〈표 2.3.2-2〉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평가영역	1 안 (No Action)		2 안 (Action)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1. 계획의 적정성검토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국제적 환경관련 조약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유지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수립할 것임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하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유지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수립할 것임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본 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인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반영가능함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구체적인 환경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후속되는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가능함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지역환경기준 등 지역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환경 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표 2.3.2-2 계속〉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평가영역	1 안 (No Action)		2 안 (Action)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 등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반영하겠음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함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계획수립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음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적인 여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국가적 환경문제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음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yes	○ 다른 행정계획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라) 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임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표 2.3.2-3〉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세부검토항목	내용	입지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가) 자연환경 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No	○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No	○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주요 산림축의 훼손은 발생치 않음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No	○ 하천기본계획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반영하겠음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No	○ 계획시행으로 생태축·녹지축 단절은 없음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계획시행으로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은 발생되지 않음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No	○ 본 계획은 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훼손사항 없음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Yes	○ 법정보호종을 고려한 하천 계획수립하겠음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해당없음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	Yes	○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과도한 지형훼손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는 발생하지 않음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본 계획은 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훼손사항 없음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No	○ 해당없음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No	○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불량경관이 해소되어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므로 심각한 경관 훼손은 없음	

〈표 2.3.2-3 계속〉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세부검토항목	내용	입지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Yes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음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Yes	○ 대상지역과 인접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은 분포하지 않음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Yes	○ 본 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인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반영가능함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Yes	○ 본 계획수립 및 시행시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임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Yes	○ 계획시행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곤란 등으로 상승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No	○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임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No	○ 계획시행으로 과도한 지형변화는 없음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않은가?	No	○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Yes	○ 하천의 수리·수문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수리·수문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4) 기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Yes	○ 평가준비서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임	

나. 수단·방법 대안 검토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단·방법으로 대안으로 대안1(확폭 및 제방축제(보축)), 대안2(제방보축 및 하상굴착)의 특징을 비교 분석 후 적정안을 선정하였음

〈표 2.3.2-4〉 수단·방법 대안

구 분	대안1(확폭 및 제방보축)	대안2(제방보축 및 하상굴착)
개 요	○ 하천 확폭 및 제방축제를 통한 홍수시 안정성 확보 - 하폭 확장, 제방 신규축조, 여유고 확보, 기존호안 활용, 둑마루폭 확보	○ 하폭변화를 최소화하고 제외지 활용을 통한 홍수시 안전성 확보 - 하상 굴착, 하폭 확장, 여유고 확보, 기존호안 활용, 둑마루폭 확보
장 점	○ 확폭 및 제방축제를 통한 홍수시 안정성 확보 ○ 확폭으로 하천공간 확보 ○ 농경지 편입 최소화 ○ 현 하천상황을 최대한 유지하여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제외지 활용을 통한 홍수시 안정성 확보 ○ 하폭변화 최소화 ○ 제내지 일부 편입으로 보상비 최소화
단 점	○ 하천 횡단 구조물의 신축 또는 보강이 일부 필요 ○ 제내지의 농경지가 일부 편입될 수 있어 보상비 과다	○ 하상굴착에 따른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안1에 비해 큼 ○ 하천 내 노후 및 폭이 좁은 보, 낙차공, 교량 등 신규 및 보강 필요
검 토 의 건	○ 모두 홍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하폭이 협소한 하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확폭 및 제방축제를 수립하여 생태환경 영향요인을 최소화하고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1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하천의 생태환경 및 주변 환경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표 2.3.2-5〉 대안별 등급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내용	대안별 등급	
	대안1(확폭 및 제방보축)	대안2(제방보축 및 하상굴착)
○ 해당 계획의 주요 목표 달성도		
- 하천의 개황	+(긍정적)	0(중립)
-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긍정적)	+(긍정적)
-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긍정적)	+(긍정적)
- 하천공사의 시행	+(긍정적)	-(부정적)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0(중립)	-(부정적)
-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 등	0(중립)	-(부정적)

주) 대안별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 제시 : ++(매우 긍정적), +(긍정적), 0(중립), -(부정적), --(매우 부정적)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

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의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설명회 일시, 장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 계획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정보통신망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문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하여 해당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공람장소는 지자체와 추후 협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할 계획임

다.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계획임
- 또한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양평군·광주시·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의견 수렴결과 공개 :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심의기간 : 2021년 9월 10일 ~ 10월 4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구 분	연 번	소속기관	성 명	직 책	비 고
위원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천 00	국장	계획수립기관
위원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두 00	주무관	협의기관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김 00	과장	계획수립기관
	3	민간전문가(위원장 위촉)	양 00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민간전문가
	4		신 00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민간전문가
	5	한국환경연구원(협의기관 추천)	김 00	연구위원	민간전문가
	6	하남시 환경정책과	정 00	과장	지자체
	7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문 00	과장	
	8	양평군 환경과	박 00	팀장	
	9	광주시 수질정책과	전 00	과장	
	10	여주시 환경과	박 00	과장	
	11	원주시 환경과	신 00	과장	
	12	주민대표(원주시)	정 00	이장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3	민간전문가(경기도)	서 00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4	민간전문가(여주시)	안 00	여주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공동회장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 직하류) 하천기본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및 강원도 여주시 일원의 국가하천 한강(섬강 합류점~팔당댐 직하류, 68.47km)과 지방하천 금당천(20.35km), 곡수천(12.40km)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지방하천 역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하천에 한하여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타 하천과 함께 작성하여야 함.
-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법정 보호종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구간 및 인접지역은 보전지구로 설정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중점지역) 범위는 생태계의 연결성(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기상 현황(주풍향 등)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의 기존 수계,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 보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축제 및 보축 등에 따른 시설물(호안 등) 설치 계획 시, 하천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식생도입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들을 조사·비교하고, 선정된 호안공법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방 및 호안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사면처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계획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및 존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하도 내 하상정리, 굴착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하상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공사 전·중·후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공사 시 모니터링 등과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 조사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사(문헌, 탐문, 현지 등) 시기·지점·범위 및 횟수 등을 선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범위는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대 설정하고,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생물서식지 파악 등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실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평가 요약서 작성 등)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

6. 기타

- 관련계획과의 부합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내역을 참조·인용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금번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금회 계획에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 등을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계획과 비교·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하천과 관련된 계획임을 감안, 공사시행으로 인한 탁수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 검토·제시

2021. 10. 7.

심의위원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및 팔당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바 하천의 수리·수문적 특성을 고려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할 것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수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측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환경질 및 동·식물상 등 평가항목에 관하여 본 계획 관련 기존 조사 결과 및 인근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문헌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 계획하천 인근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보호종에 대한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보호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4. 대안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하천계획을 수립토록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 및 설명회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적인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6. 기 타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해예방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2021. 9. 27.

심 의 위 원 양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의견없음.
3.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물환경정보시스템의 각종 측정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수질조사시 측정대행업자의 거짓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4. 대안
 - 대안1(확폭 및 제방보축)과 대안2(제방보축 및 하상굴착)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대안1로 정하였으나, 과업 대상 하천의 구간별 하상 굴착의 필요성, 퇴적물의 오염에 따른 준설 필요성, 확폭 대상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1과 대안2를 절충하여 하천 구간별 대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COVID-19상황이므로 주민 설명회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면 함.
6. 기 타
 - 전반적으로 평가준비서가 충실히 잘 작성되었음.

2021. 9. 27.

심 의 위 원 신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수리·수문적인 특성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권역으로 기본계획 수립함. 그러나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상에서 각 하천별 생태적 중요성이 고려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각 하천별로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절차로 실시하거나,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각각의 하천 고유의 특성이 평가서 내 충분히 평가·제시되어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기상 및 대기질: 본 사업이 추후 실시단계에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3. 평가항목별 조사(횡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계획의 적정성: 관련계획(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현지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생태자연도1등급지, 별도관리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이 있을 경우 수변식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대책 수립. 보 및 낙차공이 있을 경우 시설의 기능적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대규모 하중도 및 습지 존재 여부 평가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조수 분석,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자연환경 관련 보호대상 중 지형·지질과 관련된 대상의 지정 현황, 또한 계획부지 주변에 학술적·문화적·관광적·역사적 또는 자연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을 조사

4.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굴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2021. 9 . 29 .

심 의 위 원 김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선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적절한 평가항목 및 범위로 판단됨
3.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한강)의 목표수질 및 오염부하량 등 검토 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한강F 목표수질 및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수립하여 주기 바람
4. 대안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관련 주민의견수렴이 최우선 되어야 되며,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21. 9 . 29

심 의 위 원 정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의견없음.
3.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의견없음.
4. 대안
○ 자연 친화적,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함.
6. 기 타
○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지역으로 개발부하량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배출부하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식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21. 09. 30.

심 의 위 원 문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3. 평가항목별 조사(횡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계절별, 시간별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예측.평가 방법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함.
4. 대안
 - 사업 구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하여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수질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함.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으로 개발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공고,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없음.

2021. 9. 28.

심 의 위 원 박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연계성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수질 및 수리·수문 등 수환경분야에 대해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하고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및 대책 수립 필요.
 - 아울러 하상정리, 굴착, 교량설치 등 각종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환경영향을 포함하여야 함.
3. 평가항목별 조사(횡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의견없음
4. 대안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현황, 재해현황,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안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 충분히 인지시킨 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6. 기 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한강F 단위유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강F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021. 10 . .

심 의 위 원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한강(섬강~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서】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한강권역(섬강하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으로, 계획 수립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 연계성, 타당성을 제시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오염부하의 누적 영향을 포함하여 예측·평가하여야 함.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 수질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비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지역 환경계획, 경관계획 등 지역의 환경기준 및 시책 등과의 연관성 또는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주변 정온시설 현황 및 생태계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정비계획시 하천환경의 특성, 생태조사 및 생물성을 분석하여 수환경 및 공간환경개선,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사업 시행에 따른 적절한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고, 호안 등의 시설물 설치 계획시 하천 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식생도입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 등을 조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물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을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사면 처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계획하여야 함.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위치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 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은 최대한 원형보전 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활용 계획과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계획 구간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시 토사유출,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는 생물서식 파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수질 조사는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함.
- 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생육 및 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및 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소음·진동은 계절적, 시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기, 지점, 항목 등을 선정하여야 함.
- 과업구간이 하천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시행으로 인한 탁수의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관련 법에 의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9. 27.

심의위원 환경과장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원주시 외 4개 시·군 일대 한강권역(지방하천 2개소 포함)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의 기존 파업간 연결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인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보전을 달성함에 있어 인근 수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별도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하천 수계 주변 동·식물 등 생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를 통하여 4계절을 조사하고, 어류 및 양서·파충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지 조사현황과 사업 시행 시 부유토사 비점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하상 영향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이에 따른 보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로 인한 하류부 수질영향 및 수문의 변화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수생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거나 각 구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격월 또는 계절별로 정비를 실시하는 등 수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보전 방안 검토되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 없음
5. 기 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원주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중 일부[호저면 주산리 390-10(3,428㎡)]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원주시 고시 제2020-166호, '20.5.15.]된 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2021. 10. 12.

심의위원 원주시 환경과장 신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하천 주변 취락지, 축사 등 포함
3. 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적정
4. 대안
 -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필요
 -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6. 기 타
 - 관련 법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하기 바람

2021. 9.

심의위원 정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종 회 · 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대상지 선정이 필요함
○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대상지 선정이 필요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현황제시
○ 향후 실시계획이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천정비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
○ 물환경관리기본계획등에 제시한 환경 목표 반영 등 국가, 광역 및 지역 환경 계획 및 시책과 연관성 반영 제시가 필요함
3. 평가항목별 조사(횡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수질 항목 조사 시 하천기본계획구간에 녹조의 발생이 빈번하여 microcystins 추가항목이 필요함
○ 동식물상의 조사 시 3개 하천의 조사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 시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 횡수를 4계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총 4회 이상 진행이 필요함
4. 대안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천기본 계획수립 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의 시군구의 전략영향평가서 (초안)공고를 위한 현수막게재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
6. 기 타
○ 확립화된 이·치수 계획과 관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정비계획은 향후 하천의 기능 및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별 환경현황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21. 9 . 28 .

심 의 위 원 서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은 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간 국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환경목표 등 종합적인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천 고유의 기능과 자연적 특성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계획의 중점이 지나치게 이수과 치수적인 측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가뭄 등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량과 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이수 및 치수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평가항목별 조사(횡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 적정
4. 대안
○ 적정
○ 동식물 서식지 보호, 비오름의 단절 및 교란 요인 배제, 비점오염원 유입차단 및 저감 방안, 방만한 친수 공간 확대 지양 등을 고려해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정
6. 기 타
○ 한강 본류와 금당천, 곡수천 합수부의 낙차로 인한 포락 방지 강구.

2021. 10. 1.

심 의 위 원 안